

수경비이다.

둘째, 지방비부담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사업비를 들 수 있다. 국고보

다. 세출예산의 예비비는 거의 대부분이 법정으로 규정된 경비로서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고 정해진 비목외에 다른 재정투자로

〈표 23〉 실질적 투자가용재원분석

(단위: 억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 상 경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액      | 구성비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일반회계<br>예 산 규 모(A)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67,754 | 100.0 |
| 최소경상필수경비(B)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45,000 | 96.5  |
| ① 인건비 및 경상경비                 | · 인건비와 경직성경비 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6,241 | 27.5  |
| ② 보조사업비 및 지방비부담경비            | · 국고, 시·도비보조금과 양여금사업비 전액<br>· 보조금 및 양여금지방비부담액 전액 | 280,000 | 49.0  |
| ③ 채무상환비 및 이자                 | · 지방채·채무부담행위상환 및 이자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,100   | 1.5   |
| ④ 예비비 등 법정의무경비               | · 법령·조례 등에 의한 의무적부담경비 등의 예비비등 전액                 | 91,377  | 16.0  |
| ⑤ 계속사업                       | · 자체사업 중 지방비부담을 제외한 계속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| 11,400  | 2.0   |
| 실질적 투자가용재원(C)<br>(C = A - B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,800  | 3.5   |

조금 및 지방양여금 사업비와 이에 수반되는 지방비부담을 포함한 전액은 자치단체의 자유의사결정에 의해 다른 재정투자로 전환을 할 수 없는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재원이므로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여력분석에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.

셋째, 채무상환 및 이자부담을 들 수 있다. 이들 경비의 경우도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필수경비이므로 신규 재정수요에 대응한 투자가용재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.

넷째, 예비비등 법정의무경비를 들 수 있

전환될 여지가 없는 경비이다.

다섯째, 자체사업 중 계속사업비 등을 들 수 있다. 계속사업의 경우도 계획적 재정운영과 사업의 지속성 등으로 인하여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라 할 수 있다. 이상을 기초로 하여 자치단체의 실질적 투자가용재원 분석 틀을 구상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.

#### 다. 실질적 투자가용재원 분석

이상의 분석 틀을 근거로 하여 실제